

4-2-1 교원 인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예수대학교 정관에 준하여 예수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교원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및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는 모든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7.4.12>

② 삭제 <2007.4.12>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7.4.12, 2016.1.19>

② 전임교원이라 함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4.12>

③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임용시기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전에 임용된 교원은 "기간제교원" 이라 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원은 "계약교원"이라 한다. <개정 2007.4.12>

④ 제2항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제3항 계약교원의 임용은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7.4.12>

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원어민 외국어전담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4.12., 2012.7.23, 2016.9.6.>

⑥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객원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4.12., 2016.1.19., 2018.1.30., 2022.6.22.>

⑦ 강사는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학생교육을 담당한다. 강사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4.12., 2016.1.19., 2022.6.22.>

⑧ 이 규정에서 "재임용"과 "재계약"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개정 2007.4.12>

제4조(교원의 직위) 정년트랙의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며, 비정년트랙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2.7.23>

제5조(겸직) ① 우리 대학교의 전임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4.>

②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의 임원, 상업, 공업, 금융법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③ 교원이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타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초 1개월 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교외출강 및 교외출석 연구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2.4.>

제5조의 2(내부 겸직) ①총장은 교육과 연구 및 그와 관련된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에게 본교 대학 및 대학원 전공간의 강의, 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을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하며 이에관한 세부사항은 JA교원에 관한 내규에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 2. 6. >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6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임용, 승진, 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30.>

② 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며,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그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3장 임 용 <장명개정 2018.1.30.>

제7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객원교수, 강사 등 비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07.4.12., 2016.1.19., 2018.1.30.>

제8조(자격) ① 교원의 자격기준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경력년수 환산표 별표2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실적 및 교육에 대한 학식과 인격 등을 참작한다. <개정 2014.3.12., 2016.1.19.>

② 교원의 자격기준 산정시 연구경력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통산할 수 있다. <신설 2014.3.12.>

③ 교원의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이 동일기간 내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종류만 인정한다.<신설 2014.3.12.>

제9조(임용일) 교원은 임용장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30.>

제10조(임용기간) ① 정년트랙 교원은 직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07.4.12., 2012.7.23.>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7년
3. 조 교 수 : 6년
4. 삭제 <2012.7.23>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를 통해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07.11.19., 2012.7.23.>

제11조(임용기간 계산) ① 제10조의 임용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일로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임용기간이 파견 또는 출장 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 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학교법인예수대학교 정관 제37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9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30.>

⑤ 전항 이외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임용기간(재임용 포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예수대학교 정관 제37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8.1.30.>

제12조(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와 동시에 직무복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5.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신설 2018.1.30.>

제13조(의원면직)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1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1.30.]

제14조(업적평가) 교원의 승진, 승급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2.6.22.>

제15조(임용계약) ① 교원의 임용계약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체결 임용한다.

-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 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 책임강의시간 및 소속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절차 :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원의 재임용 계약은 임용계약기간 동안의 연구업적, 교육실적, 사회봉사실적, 복무실적 등을 종합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임용 계약의 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재임용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임용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되지 아니한 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 한다. <개정 2007.4.12>

제16조(임명장 교부)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발령과 함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의 경우를 제외한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발령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신규임용

제17조(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거쳐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기간을 정하여 계약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채용 및 수시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2.9.5>

1. 해당전공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
2. 해당전공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인정되는 경우
3. 해당전공분야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4. 임상교원
5.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 교원 <신설 2007.4.12>

②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을 신규임용 할 경우에는 전직 대학에서의 직위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③ 정년트랙 신규임용 교원의 자격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7.23, 2016.1.19>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자격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7.11.19, 2008.12.5, 2012.7.23, 2016.1.19, 2016.9.6.>

1. 삭제 <2012.7.23>
2. 삭제 <2012.7.23>
3. 삭제 <2012.7.23>

⑤ <신설 2007.11.19>삭제 <2012.7.23>

제18조(임용전형)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학력, 연구실적, 경력, 면접, 학과평가와 교원으로서의 자질, 성품 등을 종합하여 전형을 실시하되 그 평가 방법과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임용절차) ① 총장은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후 이사장에게 임용제청 한다. <신설 2007.04.12>

② 교원의 신규임용이 확정된 자는 관할청의 임용보고 서식에 의한 서류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별지1호 서류를 지정된 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08.12.5. 2018.12.4.>

제20조(전력조회) 전력이 있는 자는 전직 근무처에 전력을 조회하여 본인의 이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 의무를 기피한 자
10. 재임용계약에서 탈락된 자
11. 삭제 <2007.4.12>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연구실적 인정)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에 대한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19, 2014.3.12>

제23조(신임교원 초임호봉 확정) 신임교원의 초임호봉 확정은 계약에 따른다.

제5장 승진, 승급

제24조(승진, 승급시기) 삭제 <2012.7.23.>

① 교원의 승급은 근무년수가 승급년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매월 1일자로 시행한다.<개정 2012.7.23.>

② 교원의 승진은 **제28조의 승진소요년한이 경과한 교원에 대하여** 제29조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업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개정 2011.08.23, 2012.7.23., 2016.1.19. **2022.6.22.**>

제25조(특별승급)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승급 최소 년한 범위 내에서 특별 승급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할 때
2.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있을 때
3. 재해,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 또는 인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공로가 현저할 때

제26조(승급년한) 교원의 매 호봉별 승급을 요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7조(승진, 승급의 보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승급 및 승진을 보류할 수 있다

1. 삭제 <2016.1.19>
2.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달된 자
3. 교수태도 및 방법 등이 불량한 자
4. 교원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
5. 동일직위에서의 근무연한이 만료된 자
6. 경고처분 2회 또는 경위서를 2회 이상 제출한 자

제28조(승진소요년한) 우리 대학교의 교원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년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06.22. >

1. 삭제 <2012.7.24.>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개정 2012.7.23.>
3. 부교수에서 교수 : 7년

제29조(승진의 요건)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연구업적과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교수법 개선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임용시기에 따른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별표3과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단, 정년보장 교수로의 승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7.4.12., 2012.7.23, 2016.1.19., 2017.1.1.,2018.12.4., 2022.6.22.>

① 삭제< 2022.6.22.>

② 연구업적물은 승진 소요년한 내의 실적이어야 하며,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 하였을 때 최소 자연과학계열 교수560%(SCI, SCOPUS급 1편, 저·역서 1편 이상(200%까지 인정) 포함)), 인문사회계열 교수 600%(저·역서 1편 이상(200%까지 인정) 포함)), 부교수 480%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I, SCOPUS급 이상 등재지에 게재된 실적 및 저·역서 실적만 인정한다. <개정 2016.1.19., 2016.9.6.>

| 직 급 | 계 열 | 연구실적 | | 학술지 인정 |
|--------------------|---------------|---------|--|--|
| | | 논문, 저역서 | 필수사항 | |
| 부교수-->교수 (정년보장) | 자연과학 | 560% | SCI, SCOPUS급 이상 1편, 저·역서 1편 이상 (200% 까지 인정) 포함 | KCI(후보)급, SCI, SCOPUS급 이상 실적, 저·역서 실적만 인정 |
| | 인문사회 | 600% | 저·역서 1편 이상 (200% 까지 인정) 포함 | |
| 조교수-->부교수 | 자연과학 /인문사회 | 480% | - | |

③ 삭제 <2012.7.23>

④ 승진에 필요한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산학협력 활동, 신앙, 수범활동, 상벌사항등의 평가는 교수업적 평가 규정에 따르며, 승진 소요 년수 교수업적평가 결과 평균 70%이상 충족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개정 2017.1.1.>

⑤ 승진임용 예정자는 교수개발을 위하여 승진소요기간내 외부기관에서 개최된 교수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16.1.19>

제30조(승진,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은 승진,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다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30.>

가. 승진임용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나. 승급

정직 : 12개월 감봉 : 6개월

제31조(승진절차) ① 교원의 승진은 자격심의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승진임용 여부를 이사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12.4.>

② 총장은 승진임용 대상자의 승진임용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신설 2018.12.4.>

제32조(연구실적심사)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승진 소요기간 내의 연구실적에 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연구실적은 관련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의 교원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인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3 이상을 타 대학교 교원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실적 심사 평정은 평균 “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08.23>
3. 심사에서 불합격된 연구실적은 대체 또는 재심사할 수 없다.
4. 국제 SCI, SCOPUS급 이상 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의 연구실적 과 저·역서는 평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2.5><개정 2012.7.23, 2016.1.19., 2016.9.6., 2018.12.4.>

제33조(승진소요년수산정) ① 최초의 승진 소요년수는 현 직급의 최초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30.>

② 승진소요연한을 경과한 재임용 교원이 승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신청일로부터 직급별 최소 승진소요년수를 기산한다. <신설 2018.1.30.>

제6장 재임용

제34조(재임용시기)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제35조(재임용 요건) ①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임용시기에 따른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4.>

1. 삭제 <2012.7.23>
 2. 삭제 <2012.7.23>
 3. 삭제 <2012.7.23>
 4. 연구업적물은 재임용기간 내의 실적이어야 하며,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였을 때 최소 조교수 380%, 부교수 450%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SCI, SCOPUS급 이상 등재지에 게재된 실적 및 저·역서 실적만 인정한다.<개정 2007.4.12, 2012.7.23, 2016.1.19, 2016.9.6, 2017.1.1.>
 5. 재임용예정자는 교수개발을 위하여 재임기간내 외부기관에서 개최된 교수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6.1.19>
- ②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교육활동, 연구활동, 봉사활동, 산학협력활동, 신앙, 수범활동, 상벌사항등의 평가는 다음사항을 평가하며 그 세부 기준은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그 세부 기준은 교수업적 평가 규정에 따르며, 재임용 소요년수 교수업적평가 결과 평균 70%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6.1.19, 2017.1.1.>
1. 교육활동
 - 가. 수업활동
 - 나. 학생지도

- 다. 교수개발
- 라. 삭제 <2016.1.19>
- 2. 연구활동
 - 가. 학술논문
 - 나. 저.역서
 - 다. 학술활동
 - 라. 연구비수혜 <신설 2016.1.19>
- 3. 봉사활동
 - 가. 교내 행정 및 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 나. 교외 지역사회봉사 활동
 - 다. 국가 및 지역기관 전문지식 기여
 - 라. 삭제 <2016.1.19>
- 4. 산학협력 활동
 - 가. 산학연계활동
 - 나. 산업체 현장실습지도
 - 다. 삭제 <2016.1.19>
 - 라. 삭제 <2016.1.19>
- 5. 신앙생활 <신설 2016.1.19>
 - 가. 교내외 신앙활동
 - 나. 수범활동
- 6. 상벌사항 <신설 2016.1.19>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요건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7.11.19><개정 2012.7.23>

제35조의2(재임용심사 제한)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을 충족한 교원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다.<신설 2016.1.19>

- 1.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재임용 소요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중에 있는 경우
-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다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30.>
 - 가. 정직 : 18개월
 - 나. 감봉 : 12개월
 - 다. 견책 : 6개월

제36조(재임용계약) 삭제 <2007.4.12>

- 제37조(재임용 절차)** ① 총장은 재임용 대상자를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교무처를 통해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1.8.23>
- ② 재임용 대상자는 임용기간 만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업적물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를 통하여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7.4.12>
- ③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에 관한 평가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재임용 여부를 이사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4.12>
- ④ 총장은 재임용 대상자의 재임용 여부를 임용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통지한다. <개정 2007.4.12>
-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교수평가위원회의 업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08.23><개정 2014.3.12>
- 제38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총장은 인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재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된 교원에게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11.8.23>
- ②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이 그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갖추어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을 받은 총장은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재임용 탈락 교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7.4.12>

제7장 복무 및 신분보장

- 제39조(복무)** ① 교원은 교수,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4.>
- ② 교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신설 2018.12.4.>
- 제40조(신분보장)** 교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용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직, 휴직, 감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의 개폐로 인한 처분은 예외로 한다.
1.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재임용 소요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기타, 임용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41조(휴직, 복직, 직위해제와 해임) ① 교원의 휴직사유, 휴직기간,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교원의 처우, 복직 및 직위해제와 해임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한 후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30.>

③ 휴직 중인 교원은 휴직 기간 만료와 함께 즉시 복직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복직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30.>

제42조(교원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에 속하는 학기말 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43조(명예퇴직)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장 보 직

제44조(보직) 보직이라 함은 정관에 따른 직제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3.12., 2016.1.19.>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5조(포상) 교원에 대한 포상은 포상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징계) 교원의 징계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장 보수

제47조(보수) 교원의 보수 및 제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48조(인사기록) 총장은 교원의 경력 및 근무사항, 기타 인사관리상의 제반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관계법령과 관할청의 인사지침을 준용한다.

제50조(예외규정)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에는 제24조, 제28조, 제43조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개정 규정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는 개정 규정의 조교수 승진년수(6년)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정 이전 규정의 승진 소요년수(4년)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소요년수 산정은 조교수 최초 임용일로부터 계산한다.
- ③ (경과조치) 개정 규정에 의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신분이 변동된 교원의 경우, 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최초 임용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교수 승진 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2.9.5.>
- ④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당시 재직 중인 산학협력전담교원 및 외국인교원은 각각 개정 규정의 제3조 제5항에 따른 강의전담교원 및 외국어전담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1항, 7항, 제7조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4조의2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4조 2항 승진기준일 개정에 따라 이 규정 개정전 4월1일자 승진임용대상자의 승진 소요기간을 1개월 단축하여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 이전 임용된 교원은 종전 규정(2014.3.12)을 적용하되, 현직급 임용 만료 후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 이전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 제3조 3항, 4항에 따른 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제29조 2항, 제32조 4호, 제35조 1항 4호의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은 2016년 연구실적 부터 인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6.1.19이전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평가는 2014.3.12 시행 규정을 따르되, 현직급 임용기간 만료 후에는 ①항 규정에 따른다.
- ③ (경과조치) 2017.1.1. 시행일 이전 임용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평가는 2016.1.19 시행 규정을 따르되, 현직급 임용기간 만료 후에는 ①항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6.1.19.일 이전 임용 및 직급변동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평가는 2014.3.12.시행 규정을 따르되 현직급 임용기간 만료 후에는 제1항 규정을 따른다.
- ③ (경과조치) 2016.1.19.일 이후 임용 및 직급변동 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 평가는

2017.1.1.시행 규정 부칙 제3항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2.7.24>

[별표 2] <개정 2014.3.12., 2016.1.19.>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경력년수 환산표

| 경력내용 | 환산인정율 (%) | 비 고 |
|---|--|-------------------------------------|
| 1.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100%) 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경력(전임교원) 나.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 연구(실험·실습을 포함)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 에서 행한 연구실적 | 100 100 | |
|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의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0%) 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나.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다.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4)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석·박사과정 포함 5년을 초과하지 못함) 마.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년을 초과하지 못함) | 100 100 100 100 100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4조2호 |
|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30-70%) 가.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대학(전문대학포함)에서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경력 1) 시간강사는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 당 10%를 가산하되, 70%를 넘지 못함 2)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은 시간강사 경력에 준해서 인정한다.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 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박사과정 수료자 (석·박사과정 포함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석사과정 수료자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70 30-70 30-70 70 70 70 70 70 70 70 70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4조3호 |

| 경력내용 | 환산인정율 (%) | 비 고 |
|--|-----------|-------|
|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 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 가.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70 | |
| 나.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70 | |
| 다.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인정기관범위참조) | 70 | |
| ①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 |
| ②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 |
| 라.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 70 | 대학교원 |
| 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건축사의 개업기간 | 70 | 자격기준 |
| 바.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 공 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 70 | 등에관한 |
| 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에 규정 에 의거 개설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제 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의 근무경력 | | 규정 |
| 1)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 70 | 제4조4호 |
| 2) 전임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70 | |
| 3)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 70 | |
| 아. 의과대학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개업기간 | 70 | |
| 자. 신학대학 졸업자로서 목사로 재직한 경력 | 70 | |
| 차.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 70 | |
| 파.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 간부 근무 경력 | 70 | |

【인정기관범위】

-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중소기업체를 제외한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 * 대학전공분야와 부합하고 대기업체이며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면서 항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원이상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별표 3] <신설 2018.12.4.>

2016.1.19일 이전 신규임용 및 직급 변동자 승진 및 재임용 연구실적 기준

1. 승진 평가 연구실적 기준

| 구 분 | 직 급 | 계 열 | 연구실적 (KCI(후보)급이상 논문,저역서) | 비 고 |
|---------------------|-----------|-------------------|--------------------------------|---|
| 2014.3.이전 신규 임용자 | 부교수-->교 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700% (4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 70% 이상 KCI(후보)급 학술지에 등재 ■ 2014년 이후 저·역서는 KCI(후보)급 이상으로 인정 |
| | 조교수-->부교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600% (420%) | |
| 2014.3 이후 신규 임용자 | 부교수-->교 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700% (5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 80% 이상 KCI(후보)급 학술지에 등재 ■ 2014년 이후 저·역서는 KCI(후보)급 이상으로 인정 |
| | 조교수-->부교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600% (480%) | |

2. 재임용 평가 연구실적 기준

| 구 분 | 직 급 | 계 열 | 연구실적 (KCI(후보)급이상 논문,저역서) | 비 고 |
|---------------------|-----|-------------------|--------------------------------|---|
| 2014.3.이전 신규 임용자 | 부교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700% (4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 70% 이상 KCI(후보)급 학술지에 등재 ■ 2014년 이후 저·역서는 KCI(후보)급 이상으로 인정 |
| | 조교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600% (420%) | |
| 2014.3 이후 신규 임용자 | 부교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700% (4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적 70% 이상 KCI(후보)급 학술지에 등재 ■ 2014년 이후 저·역서는 KCI(후보)급 이상으로 인정 |
| | 조교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600% (420%) | |

[별표 4] <신설 2018.12.4.>

2016.1.19일 이후 신규임용 및 직급 변동자 승진 및 재임용 연구실적 기준

1. 승진 평가 연구실적 기준

| 직 급 | 계 열 | 연구실적 | | 비 고 |
|--------------------|-------------|-------------|---|---|
| | | 논문, 저·역서 | 필수사항 | |
| 부교수-->교수 (정년보장) | 자연과학 | 5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I, SCOPUS급 이상 1편 ■ 저·역서 1편 이상 (200%까지 인정)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I(후보), SCI, SCOPUS급 이상 실적만 인정 ■ 저·역서 실적만 인정 ■ 외부기관에서 개최된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1회 이상 참여 실적 필요 |
| | 인문사회 | 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역서 1편 이상 (200%까지 인정) 포함 | |
| 조교수-->부교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480% | - | |

2. 재임용 평가 연구실적 기준

| 직 급 | 계 열 | 연구실적 (논문, 저·역서) | 비 고 |
|-----|-------------|--------------------|--|
| 부교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4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I(후보), SCI, SCOPUS급 이상 실적만 인정 ■ 저·역서 실적만 인정 |
| 조교수 | 자연과학 / 인문사회 | 38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관에서 개최된 교수법 개선 프로그램 1회 이상 참여 실적 필요 |

<별지 1> <개정 2016.1.19., 2018.12.4.>

신규 채용시 구비서류

1. 이력서(소정양식) 1부
2. 인사기록 카드(소정양식) 1부
3. 졸업증명서(대학,대학원) 각 1부
4.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각 1부
5. 경력증명서 각 1부
6. 삭제 <2007.11.19>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신원진술서 1부
9. 주민등록 초본 1부
10. 주민등록 등본 1부
11. 신체검사서 1부
12. 삭제 <2007.11.19>
13. 사진(반명함판) 1매
14. 세례증명서 1부
15. 기본증명서 1부
16. 복무준수 서약서 1부
17.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1부
1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19.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1.30.>

휴 직 원

학교법인예수대학교 정관 제 37조에 의거 휴직을 희망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1.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 유 :

3. 증빙서류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이사장 귀하

